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7

발의연월일 : 2021. 2. 17.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송재호

이형석 · 오기형 · 민형배

이소영 · 김민철 · 임호선

김병주 · 양기대 · 고영인

오영환 · 김영배 · 서영교

김민석 • 서영석 • 허 영

우원식 • 이성만 • 강득구

조오섭 · 김경협 의원

(2391)

제안이유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함에 따라 교

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의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제3호가목"을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생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⑤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	
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	
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	
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	
1조제3항 <u>제3호가목</u> 에 따라 특	<u>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u>
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	
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